

1. 제안이유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방법, 절차 등 규정

- 1)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 2)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시내용에 대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안 제23조의2)

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7조 제1·2항)
- 2)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2·3항)
- 3)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안 제37조의3제1·2항)

-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4)
-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5제1항)

라.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마. 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

- 1) 사업장의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 원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 2)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안 제71조의2제2항)
- 3)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함(안 제71조의2제3항)
- 4)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1조의2제4항)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시내용에 대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출장, 휴가, 업무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한 후 작업

을 개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
· 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 점검
2. 설문조사
3. 인터뷰
4. 기타 근로자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② 사업주는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제37조의5(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4. 위험성 결정 내용
5. 개선대책 수립 내용
6. 개선대책 이행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7조의6(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제37조부터 제3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 제목“(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을“(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1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를 각각 “중대재해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등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주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등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해조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및 조사내용
3. 재해발생 원인
4.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②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의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내사를 종결한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제외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u> <u>② 공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시내용에 대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u>

<신 설>

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신 설>

3. 출장, 휴가, 업무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한 후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

<신 설>

성평가 실시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 점검

2. 설문조사

3. 인터뷰

4. 기타 근로자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② 사업주는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 설>

<신 설>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제37조의5(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4. 위험성 결정 내용
 5. 개선대책 수립 내용
 6. 개선대책 이행 결과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신 설>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신 설>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7조의6(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제37조부터 제3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 중대재해등 -----

-----.
---- 중대재해등 -----

-----.

②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등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주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등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해조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및 조사내용
3. 재해발생 원인
4.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②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의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

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내사를 종결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제외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